

23. 명예교수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 17조,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배려아대 학원대학교 명예교수의 자격, 추대절차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)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본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근 속하고 정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한 교수 중에서 그 재임기간 중 교육 및 학술 상 업적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. 단, 설립당시 의 교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.

제3조(추대절차) 제2조에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교수회의 추대로 인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통과한 다음 이사장이 임명 한다.

제4조(구비서류) 명예교수 추대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추대 받은 자의 이력서
2. 교육 및 학술에 관한 업적조서
3. 명예교수 추대 의견서
4. 기타 필요한 서류

제5조(복무와 처우)

- ① 명예교수는 본교의 제의식에 있어서 본교의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.
- ② 명예교수는 그 전공분야에 관한 강의와 연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, 강의를 담당할 경우 에는 주당 6시간 이내로 한다.
- ③ 명예교수에 대한 강사료는 강사료 지급 내규에 따른다.
- ④ 대학교의 시설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실을 제공할 수 있으며, 임기동안 도서관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제6조(추대기간) 명예교수의 추대기간은 만 70세까지로 한다. 다만, 본인의 희망과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(명예교수 추대의 취소) 명예교수가 그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은 명예교수의 추대를 취 소할 수 있다.

제8조(명예교수의 정원) 명예교수의 정원은 매 학년도 초 전임교원 정원의 10% 이내로 한 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